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2025.9.30



여수시 조례 제2246호

붙임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경비의 보조)”를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시내버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2.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3.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경비의 보조) (생략)</p> <p><신설></p>	<p>제12조(행·재정적 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 행사 일에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 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수시 시내버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2.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 ·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3.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